



Web Contents



2021년 04월 12일 21시 03분

목차

목차	2
상수도요금안내	3
환/경/수/도/사/업/단	3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3
구경별 정액 요금표	3
업종의 구분표	4
가정용	4
일반용	4
대중탕용	4
산업용	4
전용공업용	4
업종별 요율표	4
급수업종의 변경	4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5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5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5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5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5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5
가구분할 신청방법	5
가정용+일반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6
과오납금 반환 청구	6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안내	6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6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6

상수도요금안내	하수도요금안내	수질검사결과	정수장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항목해설	상수도현황	하수도현황	수돗물아껴쓰기
민원도우미	수질검사관련법규	하수도원가정보공개	관련동영상 
자료방			


환/경/수/도/사/업/단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고장이나 시설확장등으로 부득히 단수 될 때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수 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계량기구경별(mm)	요금(원)
13	940
20	2,050
25	3,360
32	5,780
40	9,640
50	17,580
75	33,260
100	55,040
150	116,400
200	170,180
250	236,980

업종의 구분표

<p>가정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p>일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p>대중탕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설소
<p>산업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농공·삼진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p>전용공업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급·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가정용	1 - 20	520
	21 - 40	630
	41 이상	680
일반용	1-100	920
	101-300	1,010
	301-1,000	1,110
	1,001-2,000	1,200
	2,001 이상	1,280
대중탕용	1-1,000	1,060
	1,001-1,500	1,140
	1,501-2,000	1,190
	2,001 이상	1,290
산업용	1- 300	850
	301-1,000	900
	1,001 이상	950

-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 제출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도과 (☎ 061-270-3526)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전 관리
 - 잔여 사용요금 납부 후 수도전 폐전 또는 중지신청을 해야합니다.
 - 폐전은 수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로 추후에 그 지번에 수도전이 필요할 경우 급수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 중지신청인 경우는 계량기 요금(구경별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 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실 때는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하누수인 경우에는 관내수도사에 의뢰하여 수리를 한 후 상·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를 수도과 (270-3526) 로 제출하시면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수리영수증, 수리과정 전·중·후사진
 - 신청기간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상수도사업단 수도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서 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구분	적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세대별로 적용
한 건물내에 영업 및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1가구당 15톤을 가정용으로 적용

✔ 가구분할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과 수용가의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가정용+일반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단, 대중탕용은 제외됩니다.
-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 061-270-3526) 로 문의 바랍니다.

✔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 수용가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 시민이 수도요금을 이종으로 납부하거나 누수감면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 과오납금 청구는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서 접수합니다.
- 서면신청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부, 본인도장 및 통장, 이종납부된 영수증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안내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 061-270-8646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 하고 있습니다.
- 일과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 수용가에게 획기적인 (<http://www.mokpo.go.kr>)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7월 부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